- 2017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-국외선진지 비교시찰 계획(안)



인천광역시 중구의회

Jung-gu Council

- 2017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-국외선진지 비교시찰 계획(안)

- 내항을 비롯한 중구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과 영종·용유지역의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지역의 도시 인프라와 선진 항만, 관광시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2조로 나누어 진행
- 선진 도시 인프라와 항만, 관광시설로 유명한 북유럽 5개국(덴마크, 노르웨이, 스웨덴, 핀란드, 에스토니아)과 러시아 및 다양한 문화관광 성공 사례를 보유한 프랑스를 답사하여 향후 보다 나은 의정활동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

I 방문목적

- 각 국의 선진 항만시설과 문화, 자연관광 시설의 개발 성공사례를 비교시찰하여 향후 우리 구의 원도심과 영종·용유 지역의 바람 직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
 - 비교시찰 지역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2조로 나누어 진행
- O 1·8부두를 비롯한 내항의 전면 재개발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지 자체의 역할과 추진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계획할 수 있는 국제 적 인식을 함양하고자 함.

\prod

방문개요

O 1조

- 방문기간 : 2017. 5. 14(일) ~ 5. 25(목) 【10박 12일】

- 방문국가 : 북유럽 5개국(덴마크, 노르웨이, 스웨덴, 핀란드,

에스토니아), 러시아

- 방문인원 : 5명

연 번	소 속	직 위(급)	성 명		
1		김 철 홍			
2	중구의회	의 원	김 규 찬		
3		의 원	이 정 재		
4	시청기묘기	의회사무과장	김 경 후		
5	의회사무과 지방행정주사보		장 지 연		

O 2조

- 방문기간 : 2017. 6. 22(목) ~ 6. 30(금) 【7박 9일】

- 방문국가 : 프랑스

- 방문인원 : 7명

연 번	소속	직 위(급)	성 명			
1	중구의회	부 의 장	유 명 복			
2		의 원				
3		의 원	임 관 만			
4		의 원	한 성 수			
5	의회사무과	수석전문위원	손 영 식			
6		의사팀장	이 미 란			
7		지방운전주사보	조 갑 진			

Ⅲ 방문지역 현황

0 1조

○ 북유럽 5개국(덴마크, 노르웨이, 스웨덴, 핀란드, 에스토니아)

- 면 적 : 약 120만 km²

- 인 구 : 약 2억 7천만명

- 날 씨 : 냉대기후

- 시 차 : 한국보다 6~7시간 느림(서머타임 적용)

- 주요특성

- ·해운업, 전자·전기산업 등이 발달해있으며, 핀란드와 에스토 니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다. 의회는 모두 임기 4년의 단원제 형태를 갖추고 있다.
- · 대부분의 국가가 의료혜택·실업수당·무료교육·노후연금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있다.

ㅇ 러시아

- 면 적 : 약 1,700만 km²

- 인 구 : 약 1억4200만명

- 기 후 : 대륙성기후(모스크바 1월 평균 -11°C, 7월 평균 19°C)

- 시 차 : 한국보다 5시간 느림(서머타임 적용, 모스크바)

- 주요특성

·러시아 GDP는 2016년 기준으로 12,678억 달러로, 세계 12위 의 수준. 주력사업으로는 천연가스, 석유, 화학, 금속, 우주항 공, 핵에너지 등이 있다.

- ·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다당제 국가로 집권여 당인 통합러시아당과 제1야당 러시아연방 공산당, 자유민주당 등으로 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있다.
- ※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제2의 도시로, 유럽과 연결되는 대표적인 항만도시. 중구 내항 재개발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.

O 2조

ㅇ 프랑스

- 면 적:약 64만 ㎢

- 인 구 : 약 6650만명

- 기 후 : 대륙, 해안, 지중해성 복합 기후

(5월 경 건조한 여름이 시작됨)

- 시 차 : 한국보다 7시간 느림(서머타임 적용)

- 주요특성
 - 이원집정부제의 대통령제 국가.
 - ·서유럽 제1의 농업국으로 밀·보리·옥수수 등이 많이 생산되며, 포도주 생산은 세계 제1위이다. 항공산업·방위산업 등 첨단과학산업 역시 발달되어 있다.
 - ※ 파리와 니스 지역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지역으로 원도심과 영종용유 지역 개발의 벤치마킹 우수사례가 될 것이며, 노르망디 기념관 등은 향후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건립될 해양박물관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.

IV

방문 세부일정

O 1조 : 북유럽(덴마크, 노르웨이, 스웨덴, 핀란드, 에스토니아), 러시아

일 자	연수지역	일 정					
제1일 5.14(일)	인 천	• 인천 공항 → 모스크바(SU 251)→코펜하겐(SU 2496)					
제2일 5.15(월)	덴마크 (코펜하겐)	 문화예술시설 답사 어말리엔보그 궁전, 인어공주 동상, 게피온 분수 등 코펜하겐 → 오슬로(DFDS) 북유럽대표 크루즈 탑승 북유럽 대표적 크루즈인 DFDS 탑승을 통하여 선진크루즈항 견학 					
제3일 5.16(화)	노르웨이 (오슬로/빈스트라)	• 공공시설 및 문화예술시설 시찰 - 시청사, 왕궁, 카를요한스 거리, 비겔란 조각공원 등					
제4일 5.17(수)	노르웨이 (뵈이야/송네피요르드)	 빈스트라 → 뵈이야 이동 자연관광지 조성 사례 답사 빙하박물관, 송네 피요르드 					
제5일 5.18(목)	노르웨이 (보스/네르달)	 송네 피요르드 → 보스 → 네르달 이동 베르겐 어시장 견학 북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어시장 중 하나로 중구 연안부두 어시장 거리 활성화에 참고 					
제6일 5.19(금)	노르웨이 (베르겐)	관광시설물 사례 답사후니쿨라 탑승을 통하여 월미도 케이블카 적용가능 여부 사례 답사					
제7일 5.20(토)	노르웨이 스웨덴 (스톡홀름)	• 베르겐 → 스웨덴 스톡홀름 이동 • 공공 및 문화시설 시찰 - 시청사 내부 견학, 바사호역사발물관, 왕궁					
제8일 5.21(일)	핀란드 에스토니아	 문화예술시설 견학 알렉산더 넵스키 성당, 돔교회, 톰페아 성 건축양식 등 건축물 축조 사례 답사 에스토니아 → 상트 페테르부르크 이동 					
제9일 5.22(월)	러시아 (상트페테르부르크)	문화예술시설 견학국립에르미따쥐박물관, 성이삭 성당, 넵스키 대로 답사를 통해 문화시설 답사					
제10일 5.23(화)	러시아 (상트페테르부르크)	• 기관 방문 -상트페테르부르그 항만공사 공식방문 (현황설명 청취 및 현장 견학)					
제11일 5.24(수)	모스크바	• 상트페테르부르그 → 모스크바(SU250) → 인천					
제12일 5.25(목)	인천	• 인천도착					

※ 현지 기관과의 협의 결과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

O 2조 : 프랑스

일 자	연수지역	<u></u> 일 정
제1일 6.22(목)	인 천	• 인천 공항 → 프랑스 파리(AF5093)
제2일 6.23(금)	프랑스	기관 방문 노르망디 해양청 공식방문 (현황설명 청취 및 현장 견학) 노르망디 관광청 공식방문 (현황설명 청취 및 현장 견학) 프랑스 노르망디 선진항만시설 시찰 노르망디 전쟁 기념관 (현황설명 청취 및 현장 견학)
제3일 6.24(토)	프랑스	 노르망디 → 몽쉘미쉘로 이동 도시기반시설 및 친환경시설 조성 사례 답사 -몽쉘미쉘, 에트르타, 옹플레흐,노르망디
제4일 6.25(일)	프랑스	• 관광지 도입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 사례 답사 - 지베르니, 베르사유궁 등 파리외곽도시 답사
제5일 6.26(월)	프랑스	• 건축양식 등 건축물 축조 사례 답사 및 전시회·박람회 등 이벤트 운영실태 답사 - 루브르, 오르세 박물관, 몽마르뜨
제6일 6.27(화)	남프랑스	 파리→ 니스(AF7700) 항만 및 친수환경시설 시찰 내항에 접목할 수 있는 항만, 요트정박장, 테마파크시설 조사
제7일 6.28(수)	남프랑스	• 특화거리 및 야간 경관시설 조성 및 기타 벤치마킹 사례 답사 - 에즈, 생폴드방스, 그라스, 모나코 등 문화시설 답사
제8일 6.29(목)	인 천	• 니스 → 파리(AF 7709)→ 인천 공항(AF5092)
제9일 6.30(금)	인 천	• 인천 도착

※ 현지 기관과의 협의 결과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

V

소요예산

○ 1조 (북유럽 10박 12일)

○ 총 예 산 : 금14,477,900원

성 명		지 급 액	-레/이\	항공료(원)		체 재	준비금	비고		
		지 급 액	계(원)		소계(\$)	일비	숙박비	식 비	(원)	비끄
총	계	14,477,900	18,409,600	6,000,000	10,704	1,661	5,890	3,153	100,000	
소	계	7,500,000	11,431,700	3,600,000	6,758	1,045	3,680	2,033	60,000	
의	장	2,500,000	4,157,100	1,200,000	2,554	385	1,360	809	20,000	※ 숙박비는
의	원	2,500,000	3,637,300	1,200,000	2,102	330	1,160	612	20,000	할인정액
의	원	2,500,000	3,637,300	1,200,000	2,102	330	1,160	612	20,000	적용(85%)
소	계	6,977,900	6,977,900	2,400,000	3,946	616	2,210	1,120	40,000	※ 항공료는
사무	과장	3,637,300	3,637,300	1,200,000	2,102	330	1,160	612	20,000	예산범위 내
장기	지연	3,340,600	3,340,600	1,200,000	1,844	286	1,050	508	20,000	실비 산출

- ※ 의원별 1인당 예산 편성액은 250만원이므로 여비초과분은 의원 자부담
- ※ 기관 방문 및 비교시찰에 따른 통역비 별도 산정

ㅇ 산출내역

구 분	산	출 기 초	비고
항공료	의장 의원·5급이하	1,200,000원 × 5명 = 6,000,000원	왕복
	의장	35\$ × 1일 × 1명 = 35\$ 35\$ × 10일 × 1명 = 350\$	모스크바 북유럽
일 비	의원	30\$ × 1일 × 2명 = 60\$ 30\$ × 10일 × 2명 = 600\$	모스크바 북유럽
(12 일차 미포함)	5급	30\$ × 1일 × 1명 = 30\$ 30\$ × 10일 × 1명 = 300\$	모스크바 북유럽
	6급이하	26\$ × 1일 × 2명 = 52\$ 26\$ × 10일 × 2명 = 520\$	모스크바 북유럽
	의장	136\$ × 10일 × 1명 = 1,360\$	북유럽
숙박비	의원	116\$ × 10일 × 2명 = 2,320\$	북유립
(11, 12일차 미포함)	5급	116\$ × 10일 × 1명 = 1,160\$	북유럽
14-17	6급이하	105\$ × 10일 × 2명 = 2,100\$	북유럽
	의장	107\$ × 1일 × 1명 = 107\$ 78\$ × 9일 × 1명 = 702\$	모스크바 북유럽
식 비	의원	81\$ × 1일 × 2명 = 162\$ 59\$ × 9일 × 2명 = 1,062\$	모스크바 북유럽
(1일, 12일차 미포함)	5급	81\$ × 1일 × 1명 = 81\$ 59\$ × 9일 × 1명 = 531\$	모스크바 북유럽
	6급이하	67\$ × 1일 × 2명 = 134\$ 49\$ × 9일 × 1명 = 882\$	모스크바 북유럽
준비금	여행자보험	20,000원 × 5명 = 100,000원	

○ 국가 및 도시별 등급 : 러시아 모스크바 "가" 등급 / 북유럽 "나" 등급 ※『공무원 여비규정』【별표4】국가 및 도시별 등급 적용

○ 2조 (프랑스 7박 9일)

○ 총 예 산 : 금20,000,800원

성 명	지급액	-레 / 이)	항공료 (원)		체 재	비(\$)		준비금	비고
'ধ ব		계(원)	영 등 표 (권)	소계(\$)	일비	숙박비	식 비	(원)	비꼬
총 계	20,000,800	24,426,250	9,789,000	12,607	1,656	6,890	4,061	140,000	
소 계	10,000,000	14,426,250	5,510,800	7,683	1,000	4,168	2,515	80,000	
부의장	2,500,000	4,009,350	1,377,700	2,271	280	1,222	769	20,000	
의원	2,500,000	3,472,300	1,377,700	1,804	240	982	582	20,000	※ 숙박비는
의원	2,500,000	3,472,300	1,377,700	1,804	240	982	582	20,000	할인정액
의원	2,500,000	3,472,300	1,377,700	1,804	240	982	582	20,000	적용(85%)
소 계	10,000,800	10,000,800	4,278,200	4,924	656	2,722	1,546	60,000	※ 항공료는
수석전문위원	3,472,300	3,472,300	1,377,700	1,804	240	982	582	20,000	예산범위 내
의사팀장	3,191,700	3,191,700	1,377,700	1,560	208	870	482	20,000	실비산출
조갑진	3,336,800	3,336,800	1,522,800	1,560	208	870	482	20,000	

- ※ 의원별 1인당 예산 편성액은 250만원이므로 여비초과분은 의원 자부담
- ※ 기관 방문 및 비교시찰에 따른 통역비 별도 산정

ㅇ 산출내역

구 분	산	출 기 초	비고
항공료	의장 의원·5급이하	1,377,700원 × 6명 = 8,266,200원 1,522,800원 × 1명 = 1,522,800원	왕복
	부의장	35\$ × 5일 × 1명 = 175\$ 35\$ × 3일 × 1명 = 105\$	파리 프랑스
일 비	의원	30\$ × 5일 × 3명 = 450\$ 30\$ × 3일 × 3명 = 270\$	파리 프랑스
(9 일차 미포함)	수석전문위원	30\$ × 5일 × 1명 = 150\$ 30\$ × 3일 × 1명 = 90\$	파리 프랑스
	6급이하	26\$ × 5일 × 2명 = 260\$ 26\$ × 3일 × 2명 = 156\$	파리 프랑스
	부의장	190\$ × 5일 × 1명 = 950\$ 136\$ × 2일 × 1명 = 272\$	파리 프랑스
숙박비	의원	150\$ × 5일 × 3명 = 2,250\$ 116\$ × 2일 × 3명 = 696\$	파리 프랑스
(8, 9일차 미포함)	수석전문위원	150\$ × 5일 × 1명 = 750\$ 116\$ × 2일 × 1명 = 232\$	파리 프랑스
	6급이하	132\$ × 5일 × 2명 = 1,320\$ 105\$ × 2일 × 2명 = 420\$	파리 프랑스
	부의장	107\$ × 5일 × 1명 = 535\$ 78\$ × 3일 × 1명 = 234\$	파리 프랑스
식 비	의원	81\$ × 5일 × 3명 = 1,215\$ 59\$ × 3일 × 3명 = 531\$	파리 프랑스
(9 일차 미포함)	수석전문위원	81\$ × 5일 × 1명 = 405\$ 59\$ × 3일 × 1명 = 177\$	파리 프랑스
	6급이하	67\$ × 5일 × 2명 = 670\$ 49\$ × 3일 × 2명 = 294\$	파리 프랑스
준비금	여행자보험	20,000원 × 7명 = 140,000원	

○ 국가 및 도시별 등급 : 파리 "가" 등급 / 그 외 지역 "나" 등급 ※『공무원 여비규정』【별표4】국가 및 도시별 등급 적용

O 구 분

- 의 장:『공무원 여비규정』【별표1】제1호 라목
 - ※『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』 【별표2】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국외여비지급 기준표 준용
- 의 원:『공무원 여비규정』【별표1】제2호 가목
- 5 급:『공무원 여비규정』【별표1】제2호 가목
- 6급 이하: 『공무원 여비규정』 【별표1】 제2호 나목

O 환 율 : 1\$ = 1,150원(외환은행 2017. 4. 6일 매매기준)

>	기준일: 2017-0	4-06 → 고시	시간 : 1			[조회시	각 2017-04	-06 19:48]				
	통화명	현찰			송금		T/C	외화수표	0H 0H	환가	미화	
	유자음	사실때(스크	프레드율)	파실배(스프	드레드율)	보내실때	받으실때	사실때	파실때	기준율	료율	환산율
	미국 USD	1150.99	1.75	1111.41	1.75	1142.20	1120.20	1144.77	1119.31	1131.20	2.8356	1.0000

O 예산과목

- 의 원 : 의정활동지원, 의회업무수행지원, 국내외연수, 의회비, 의원국외여비
- 직 원 : 의회사무과, 의정활동지원, 의회업무수행지원, 국내외연수, 여비, 국외업무여비(공무수행여비)
- 통 역: 의정활동지원, 의회업무수행지원,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(통역비)

VI 행정사항

- O 효과적인 비교시찰을 위한 담당분야 지정 및 업무분담 회의
- O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의뢰(직원) : 2017. 4. 14 한
- O 중구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개최 : 2017. 4. 24한
- 귀국보고서 제출 : 귀국 후 30일 이내